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 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사업」 운영(안 제5조)

-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사업
 -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관련 단체, 협회 등에 사무 위탁 및 행정, 예산 등을 지원

나.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주민 대표
 -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12.02 ~ 2015.12.22.) 결과 “의견 반영(안 제5조)”

제 출 의 건	처 리 계 획
○ 특화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시 (예 : 산양삼 재배농가 제초 지원, 생산 신고 지원, 축제 지원 등)	○ 반영여부 : 반영 -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 산업 육성사업 -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사업 -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2)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기업청장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제4조(광고물의 특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강원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자문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5조(특화사업 운영)

-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 ③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 및 협회, 산양삼 재배 농가에게 사무 위탁 및 행정,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11조(위원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및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산림과장 김 철 환
연락처	(033)330 -2450

관계법령 발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기업청장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특구계획의 제안)

- ①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구계획을 해당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②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특구계획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3장에 따른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조(조례의 제정)

- ①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